

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 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 32 조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·감독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, 연구, 콘텐츠 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국내외 협력사업 및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기후·환경·에너지 분야 이해와 실천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”(이하 “법인”)라 칭한다.
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둔다.
- ②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, 지부 또는 부설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사업)

- ①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사업
 - 2. 디지털 기반 학습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사업
 - 3.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사업
 - 4.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
 - 5.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

6. 학교·기업·공공기관·지방자치단체·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문사업
7. 국내외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사업
8. 출판·홍보·정보제공 사업
9.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위탁사업
10.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개발·인증 및 수료제도 운영사업
11. 취약계층, 청년, 지역사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공익 교육 지원사업
12. 기후위기 대응,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가능사회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
13.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후원, 기부금품 접수 및 교육기금 조성사업
14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법인은 제1 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교육 참가비 및 교육과정 운영 수입사업
2. 콘텐츠 이용, 출판 및 저작권 관련 수입사업
3. 연구·조사·자문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사업
4.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사업

③ 제2 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주무관청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승인·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제2 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 또는 특정 개인·단체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 조(법인의 이익)

①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②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, 법인이 추진하는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
③ 법인은 회원 또는 특정 개인·단체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며, 모든 목적사업은 공익 증진을 위하여 수행한다.

제 6 조(공익성 및 정치적 중립)

- ①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공익성, 투명성, 독립성 및 책임성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.
- ② 법인은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상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.
- ③ 법인의 임원, 직원 및 회원은 법인의 명칭, 조직, 재산, 홈페이지 또는 사업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회원

제 7 조(회원의 자격과 구분)

-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써,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③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8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법인의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이를 행사하려면 총회 개최일 기준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 단체인 정회원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인 정회원과 동일하게 각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, 총회 개최일 기준 5 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으며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- ④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수강료 할인 등 회원에게 부여되는 제반 혜택을 누린다.
- ⑤ 회원의 권리는 법인의 재산 또는 수입을 배분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아니한다.
- ⑥ 회원의 종류, 가입절차, 회비, 혜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탈퇴)

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회원의 제명)

①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법인의 명예·위신 또는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
3. 정관 또는 총회·이사의 의결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4.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② 제 1 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명에 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(후원자 등)

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를 둘 수 있다.

②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는 금전, 물품,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는 이 정관상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다.

④ 후원금품의 접수, 사용,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임원

제 12 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- ①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- 1. 이사 5 명 이상 30 명 이하
 - 2. 감사 2 명
- ② 제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 명을 포함한다.

제 13 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4 조(이사장의 선출과 임기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가 선출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이사의 지위를 함께 상실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총회에서 이사를 보선한 후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.

제 15 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16 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이사장이 궐위되어 제 14 조 3 항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, 그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이사 중 1 인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7 조(감사의 직무)

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,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며,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법·부당하거나 부정·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5. 제 4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하는 일

제 18 조(임원의 보수 및 이해충돌 방지)

-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교육·강의·연구·자문 등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로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.
- ④ 임원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,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⑤ 법인은 임원, 직원, 회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재산상 이익이 부당하게 이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 19 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6. 기본재산의 처분, 양도, 교환,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0 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 회,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,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한 정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총회는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한 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출석 및 의결권 행사 방법은 본인확인, 의사표시 확인 및 회의기록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1 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의결권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은 의결권 있는 재적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.

제 22 조(총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의결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법·부당하거나 부정·불비한 점이 있음을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 장 이사회

제 24 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6. 분사무소, 지부 또는 부설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명예이사 위촉, 운영이사회,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부금품 모집, 후원 및 교육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
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10.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25 조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 의사결정권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한 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26 조(의결제척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- 3.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
- 4. 회원의 제명에 있어 자신 또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에 관한 사항

제 27 조(이사회소집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상 개최하며,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 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감사가 제 19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29 조(서면의결 금지)

이사회 의사결의는 서면결의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.

제 6 장 자문 및 운영조직 등

제 30 조(명예이사회)

- ① 법인은 법인의 비전과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, 상징적 지지 및 전략적 조언을 얻기 위하여 명예이사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명예이사회는 사회 각 분야의 원로 및 전문가 10 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명예이사는 이사회 의사결로 추대한다.
- ④ 명예이사회는 자문기구로서 법인의 대표권, 의결권, 재정 집행권 또는 이사회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.
- ⑤ 명예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31 조(원장 및 부원장)

-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실무 수행을 위하여 원장 1 명과 3 명 이내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-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,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순위 또는 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원장 및 부원장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 보직으로서, 이 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결에 따라 대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.

제 32 조(운영이사회)

- ① 법인은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에서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현안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운영이사회는 이사로만 구성하며, 원장을 포함한 10 인 이내로 한다.
- ③ 운영이사회는 원장이 주재하며, 원장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현안의 협의·조정을 총괄한다.

- ④ 운영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지원, 사업 집행 상황 점검, 예산 집행의 사전 검토,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현안 조율, 이사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수행한다.
- ⑤ 운영이사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없다.
- ⑥ 운영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33 조(위원회)

-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각 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·기획·검토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.
-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법인의 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⑤ 각 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의결을 대신할 수 없으며, 위원회의 의결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아니한다.
- ⑥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34 조(사무국)

-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, 직원의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7 장 재산 및 회계

제 35 조(재산의 구분)

-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2. 기부자 또는 출연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
 3. 운영재산 중 총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
 4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
-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제 36 조(재산의 평가)

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 37 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회원의 회비, 출연금, 후원금 및 기부금, 보조금,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, 그 밖의 적법한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 38 조(수입 및 재산의 사용)

- ① 법인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은 수입 또는 재산을 회원, 임원, 직원, 기부자 또는 특정 개인·단체에게 부당하게 분배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회계의 구분)

법인의 회계는 비수익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제 40 조(회계원칙)

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 또는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41 조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42 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예산으로 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43 조(기부금품의 접수·사용 및 관리)

- ①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
- ② 기부금품은 관계 법령, 기부자의 지정 목적 및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기부금품의 접수, 사용, 회계처리 및 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 44 조(기부금의 공개)

- ①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.
- ②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45 조(홈페이지 운영 및 공익위반 제보)

- ① 법인은 목적사업,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, 공익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 법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익위반 제보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다.

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 46 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7 조(해산)

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48 조(잔여재산의 귀속)

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 9 장 보칙

제 49 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,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·감독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창립회원의 의결권 등에 관한 특례)

이 정관 제 8 조 제 2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창립총회 당시 회원은 법인 설립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 3 조(초대 이사장의 선출에 관한 특례)

이 정관 제 1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법인 설립 당시의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.

사단법인 탄소중립 아카데미 나무 회원 (발기인)

연번	성명	주소	서명
1	서병륜		
2	안병옥		
3	강인순		
4	김룻		
5	김익수		
6	김혜애		
7	류종성		
8	송영일		
9	신용승		
10	오수길		
11	윤제용		
12	이태일		
13	임정근		
14	장미정		
15	정남순		
16	추장민		
17	이종오		
18	이한경		
19	박상철		
20			